

권리자가 직접 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

복제전송 중단요청이란?

- 온라인에서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발견하였을 때.
- 권리자는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 해당 게시물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 복제전송중단요청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 예시 사례는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 저작권OK 홈페이지(www.copyrightok.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유선(1588-0190(0))으로 문의 주세요.
- 열린상담실로 내방하시면 즉석에서 전송중단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의 옆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4층

- 홈페이지 : <http://www.kcopa.or.kr>
- 대표번호 : 1588-0190

☑️ 방법은요?

- ①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등 대규모의 온라인사이트에서는 절차를 자동화하여 복제 및 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비해두었고,
- ② 기타 홈페이지나 웹하드 등에서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이메일 또는 서류를 통해 중단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와 저작권OK 홈페이지(www.copyrightok.kr)에 예시 양식을 게시해 두고, 보호원의 열린상담실에서는 복제전송중단요청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① 내가 해당 게시물의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1.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등
 2. 자신의 성명이나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등
(자신이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신분증 전체인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리는 등의 신분증의 부분인 경우도 있으니 제출 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②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어려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저작권 보호 도우미,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있잖아요.

- ① 요청을 했는데, 회신도 없고 중단 처리도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서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출 서류가 적절했는지 보호원에서 점검해 드릴게요.
- ② 저작물의 위치 정보를 찾을 수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하죠?
 - 가끔 저작물의 위치 정보를 찾을 수 없거나, 판매자의 이름이 심하게 가려져 구분이 어렵거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없고 연락처가 있더라도 연락이 닿질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연락주세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서비스사업자라면 보호원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제전송 중단 요청 시 필요 서류

■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적지 않은 저작물(예: <저작권 보호법 제 11조>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일부)

복제·전송처	쓰레기소파기	요양병원
원리 교습부	정형외과	신정동의 중수
관련부	기초	
복제·전송의 목적	개인용 연구용	비영리, 교육, 노년 서비스
요청사(연락처)	이재민 010-1234-5678	부동산업 (주) 1234-5678
대상 저작물	음악CD (유저업권번호)	영화물의 경우
주소		

※저작권, 사생활에 관한 권리(발행권) 제4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제1항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 기재된 때에는 원인이 있는 한 불응할 수 있다. (주소, 연락처 포함)

본인서비스책임자 ○ ○ ○ ○ ○ 가리

1.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 정한 경우
 2.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정한 경우
 3.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3호에 정한 경우
 4.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4호에 정한 경우
 5.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5호에 정한 경우
 6.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6호에 정한 경우
 7.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7호에 정한 경우
 8.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8호에 정한 경우
 9.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9호에 정한 경우
 10.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0호에 정한 경우
 11.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1호에 정한 경우
 12.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2호에 정한 경우
 13.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3호에 정한 경우
 14.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4호에 정한 경우
 15.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5호에 정한 경우
 16.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6호에 정한 경우
 17.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7호에 정한 경우
 18.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8호에 정한 경우
 19.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19호에 정한 경우
 20.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20호에 정한 경우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앞장을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본인이 권리주장자인 경우,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합니다. 권리 소명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의 위치를 기입합니다. 양이 많으면 뒷장을 사용하세요.

날짜와 신청인의 서명(또는 도장), 요청하고자 한 날짜와 OSP의 이름을 적습니다.

(일부)

번호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 (제목, 글)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 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 곳에는
 저작물명을
 기입하세요.

이 곳에는
 위치 정보를
 기입하세요.

기본적으로 URL 정보를 기입합니다.



하지만 종종, URL 정보가 명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고유 번호가 있는지 찾아보세요.